서울특별시의회
제321회 정례회

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유해약물 오·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 명

2023. 12.

서울특별시의회

김기덕 의원(더불어민주당, 마포4)

□ 존경하는 이승미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!
안녕하십니까?
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기덕 의원입니다.

□ 본 의원이 발의한
「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유해약물 오·남용
예방에 관한 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.

□ 본 조례안의 제정 배경을 살펴보면,
최근 전국적으로 학생들의 마약 구매 및
투약 등으로 인한 유해약물 오·남용이 빈번하게 발생해
학생의 육체 및 정신건강에 심각한 위협을
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며,

□ 주류, 담배, 마약류 등의 청소년 유해약물에 대한
오·남용 예방교육 추진 근거 마련을 통한
제도적 기반 강화 및 교육감의 책무 강화는 물론,
예방교육의 체계적·지속적 추진을 지원하여,
학생들의 건전한 정신건강회복 및
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.

□ 이에 안 제1조 및 제2조의 경우,
제정 배경에 기반한 목적 및
학생, 청소년 유해약물, 청소년 유해약물
오·남용 예방교육에 대한 정의조항을 신설하였으며,

□ 안 제3조의 경우, 청소년 유해약물로부터
학생 보호 및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
효과적 예방교육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.

□ 또한, 안 제5조의 경우, 청소년 유해약물
오·남용 예방교육 기본계획 수립·시행에 대한
사항을 규정하였으며,

안 제6조의 경우, 청소년 유해약물 교육실적에 대한
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.

□ 안 제7조의 경우, 유해약물 오·남용 예방사업 등에
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,

안 제8조의 경우, 유해약물 예방교육 활성화를 위한
표준안 제공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.

□ 안 제9조의 경우, 유해약물 예방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교원연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,

안 제10조의 경우, 유해약물 예방교육 활성화를 위한 자문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.

□ 또한, 안 제11조의 경우,
학생의 약물 오·남용 예방을 위한
홍보 및 캠페인 활동에 대한 조항을 비롯해,
매년 마약퇴치의 날에 시장, 경찰,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으로
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행사 등을 추진할 수 있는
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.

□ 마지막으로 안 제12조에서 제14조의 경우,
유해약물 오·남용 예방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
기관 및 법인 등의 사무 위탁(안 제12조)에 관한 사항,
서울시 지역사회 전문기관·단체 등과의
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조항(안 제13조),
청소년 유해약물 오·남용 예방에 기여한
기관, 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한 포상 등에 관한
사항(안 제14조)을 규정하였습니다.

□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
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□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으로
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,
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